

[시행 2021. 9.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21. 9. 6., 일부개정]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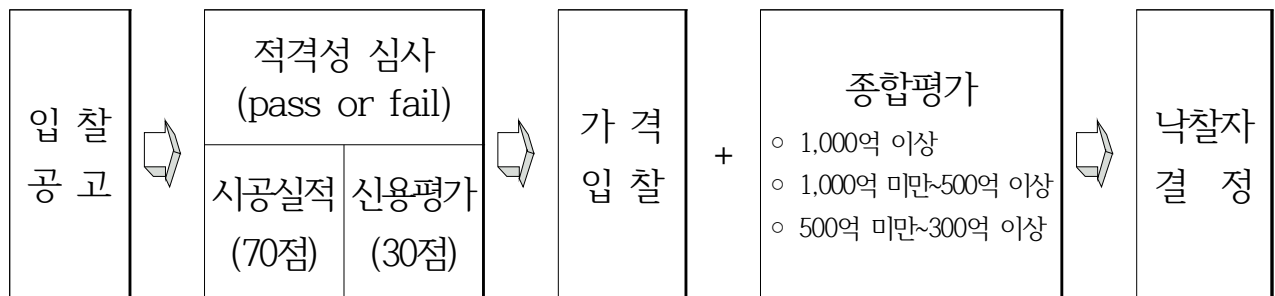
행 정 안 전 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총 칙

1.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다. **추정금액**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라. **예정가격** :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마. **평가분야** : 적격성심사 평가분야(이행능력평가)와 종합평가분야(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를 말한다.
- 바. **평가항목** :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적격성심사 분야의 시공실적, 신용평가와 종합평가 분야의 입찰가격, 동일실적 경과정도, 기술능력, 시공품질, 하도급적정성, 사회적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말한다.
- 사.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한다.
- 아.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자. **동일공종그룹 구분** : 토목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은 주거, 비주거로 구분한다.

제3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총괄

평가분야		평가 항목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Pass / Fail	Pass / Fail		
종합 평가	입찰가격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	40	50		
	기술이 행 능력	동일실적 경과정도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10	10	10	
		기술능력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	25	20	
		시공품질	시공평가 결과	15	15	10	
		하도급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사회적 신인도 [가점:1)+2)+3) +4)=1점]	사고사망만인율		0.5	0.5	0.5
			상호협력		0.5	0.5	0.5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0.5	0.5	0.5
			건설인력고용		0.5	0.5	0.5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	$\Delta 2+\alpha$	$\Delta 2+\alpha$	$\Delta 2+\alpha$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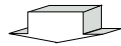
바. 사회적 신인도 평가(가점한도 1.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 ③ 공동도급방식 ④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 인정범위 ⑤ 평가 대상 업종 ⑥ 평가자료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기한 ⑦ 그밖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



2. 입찰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유형, 제한 사항, 동일실적·인정기준 규모·평가 업종 등 세부심사기준 열람,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가격입찰 시기,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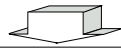
3. 현장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 업체, 실적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로 한다.
----------------	---



4. 적격성 심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사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적격성 심사 신청마감일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성 심사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별지 제3호 서식) ㉣ 업체현황 조서(별지 제4호 서식) ㉤ 공사 실적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7-1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결산서 감사보고서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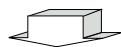
5.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	<p>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 심사 제출서류에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성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하 같다.)이 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② 보완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한다.</p>
--------------------------	--



6.1단계 적격성 심사 실시	<p>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적격성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밀 검토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3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필요한 경우 조달청시스템, 관련협회, 증명서 발급기관 등에 조회하거나 사실조사를 한다.</p> <p>② 입찰 참가자별 심사항목별로 심사를 실시한다.</p> <p>-심사서류는 심사 기준일을 입찰공고에 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심사기준일로 한다.</p> <p>③ 심사항목별로 심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은 심사 대상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부여한다.</p>
------------------------	--



7. 입찰적격자의 선정	<p>① 적격성심사 결과 이행능력평가(시공실적+신용평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다.</p> <p>㉠ 시공실적 평가(70점):유형별 평가</p> <p>- 고난이도 공사, 실적제한 공사, 실적제한 하지 않는 공사 구분 평가</p> <p>㉡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p> <p>※ 시행령 제99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97조의2에 따라 선정된 적격자는 적격성 심사 통과자로 본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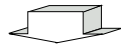
8. 심사결과 의 통지	<p>계약담당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을 정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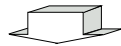
9.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p>① 심사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해당업체의 자기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p> <p>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거나 통지해야 한다.</p>
------------------------	---



10.가격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적격성 심사 통과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게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③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



11.2단계 종합평가 심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종합평가 심사 대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1호 서식) ㉢ 건설기술자(품질,안전기술자) 보유 현황표(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I 유형(고난이도공종) 중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함) ㉤ 경영상태 등 평가사항(별지 제10호 서식) ㉥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 ㉧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추가 제출(보완)을 받아 평가하며, 보완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평가기준(평가기준일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



12.종합심사 실시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
-------------------	---



13.종합심사 결과통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면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시하거나 낙찰자에게 통지한다.
---------------------	---



14.이의신청 과재심사 실시	<p>① 부적격 통지를 받은 자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후 순위 입찰자는 그 결정의 취소나 시정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③ 계약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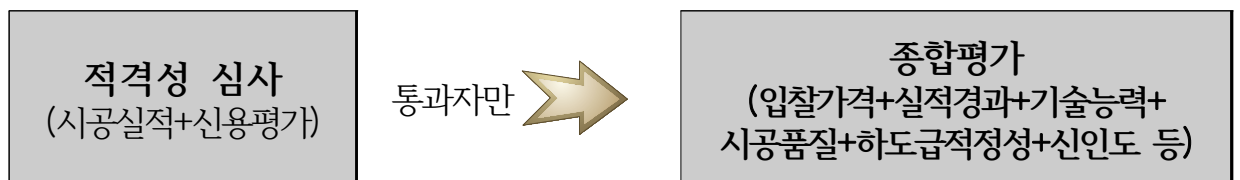
15.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재심사 결과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স্য령

1 공통적용사항

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나.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 1)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한다.
- 2)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

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주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업종 \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합계
구성비율	60	30	5	5	100

→ 평가대상업종 : 토목

업종 \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100
B사	-	30	-	-	30	-
C사	-	-	5	-	5	-
D사	-	-	-	5	5	-

<대상공사 2>

업종 \ 구성원	합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100	80	10	5	5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업종 \ 구성원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60	-	-	-	60	75%
B사	20	-	-	-	20	25%
C사	-	10	-	-	10	-
D사	-	-	5	5	10	-

<대상공사 3>

업종 \ 구성원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합계
구성비율	40	40	10	10	100

→ 평가대상업종(주업종) : 토목, 건축

업종 \ 구성원	토목	건축	통신	소방	구성비율	환산비율
A사	50		-	-	50	62.5
B사	30		-	-	30	37.5
C사	-	-	5	-	5	-
D사	-	-	-	5	5	-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I 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 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II 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III 유형	일반공종	I, II 유형을 제외한 입찰

※ 분류기준 : 고난이도 공종, 일반공종 및 실적제한 여부에 따라 구분

- 나) 위 유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유형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I 유형과 II 유형의 실적 인정범위, 인정규모, 평가 기준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유형별 평가기준

가) I 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200% 이상	150% 이상	120% 이상	70
			165% 이상	110% 이상	90% 이상	65.8
			11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1.6
			55% 이상	40% 이상	3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text{부가가치세})\times 5}$ 			

나) II 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동일공사			평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70	15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70
			120% 이상	90% 이상	80% 이상	65.8
			90% 이상	60% 이상	50% 이상	61.6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57.4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53.2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 3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text{부가가치세})\times 5}$ 			

다) III유형 경우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 점		
			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최근 5년간 업종 실적	입찰공고시 해당업종 명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 100 × 실적계수(실적계수의 상한은 1)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text{부가가치세})\times 5}$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 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text{시공실적} = \frac{[\text{공동수급체 대표사(A)}\times\text{시공비율}]+[\text{공동수급체(B)}+(C)\dots]}{\text{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times 100(\%)$$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평가예시]

-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4000억	2400억 4000억×60%
전문1	30%	철콘	500억	150억 500억×30%
		토공	200억	60억 200억×30%

전문2	10%	철콘	300억	30억 300억×10%
		토공	120억	12억 1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2400억

- 전문업체 철콘 합산실적 = 150억 + 30억 = 180억 ⇒ 16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400억 × 40% = 160억

“2) 산식에 따른 80억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4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400억 × 5 - (4000억 × 60% × 80%) = 2000억 - 1920억 = 8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160억 반영하여 평가

- 전문업체 토공 합산실적 = 60억 + 12억 = 72억 ⇒ 40억 상한 적용

“1) 산식에 따른 100억 × 40% = 40억

“2) 산식에 따른 -1420억

* 토공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00억) × 5 - {종합업체 실적(4000억) × 종합업체 시공비율(6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100억 × 5 - (4000억 × 60% × 80%) = 500억 - 1920억 = - 1420억

⇒ 1), 2) 중 큰 1)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 실적 40억 반영하여 평가

○ 공동수급체 합산실적 = 2400억 + 160억 + 40억 = 2600억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 또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 규모 또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 또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하여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70%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기준물량 또는 금액보다 하향조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은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마) 5년간 업종 실적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인정범위는 [별표1] 제2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발주기관이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실적계수 산식을 하향조정(하향조정시 공고에 명시)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된 결과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해당 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공사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나) 조달청 등에 위탁하여 발주하는 경우의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조달청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사서류 제출 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 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5) 실적인정 기준시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별표 1]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5년간 실적을 연도단위(1. 1~12.31)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6) 실적심사 시 유의사항

가) 해당 공사에 포함된 교량이나 터널 구조물이 상·하행선으로 각각 분리된 경우는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

하행선의 연장이 다른 경우는 합산 연장의 1/2로 한다.

나)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라)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2)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30점)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한다.

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기업신용평가 BBB 등급인 업체가 BB등급업체와 합병한 경우
 - 입찰공고전 합병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없음 : BB등급으로 평가(낮은 등급)
 - 적격성심사 완료전 합병 & 신규등급 있음 : 신규등급으로 평가
 - 적격성심사 완료후 합병 : BBB등급으로 평가(소급적용 배제)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의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업체가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해당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바) 감사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III. 신용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8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8
BB0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8.6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4
B+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0.0

③ 종합평가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평가(10점)

준공실적 경과정도	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	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9.8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9.6

주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시 명시한 동일실적·인정범위(규모 또는 금액)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 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2) III유형의 경우에는 배점한도 적용한다.

주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한 준공 실적의 경우 9.6점으로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

1) 유형별 심사기준

가) 「I 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1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3.0 2.0 1.0
	2)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1.0 9.4 7.8 6.2
	3)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9인 이상) C. 10인이상(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5)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6)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7)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 1)의 동일공종그룹은 <별표3> 분류표를 적용

주3)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4)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5) ‘나’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6)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7)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8)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나) 「I 유형 중 300억 이상 500억 미만 공사」 및 「II유형 공사」 의 경우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1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14.0 11.9 9.8 7.7
	2) 일반기술자	11.0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9인 이상) C. 10인이상(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4) 안전기술자 (3년 이상)	3.0	A. 3인이상(2인 이상) B. 3인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0 1.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5)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6)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다) 「Ⅲ유형 공사」의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31점)	1) 일반기술자	21.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9인 이상) C. 10인 이상(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2) 품질기술자(3년 이상)	5.0	A. 2인 이상(2인 이상) B. 2인 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3.8
	3) 안전기술자 (3년 이상)	5.0	A. 2인 이상(2인 이상) B. 2인 미만(2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5.0 3.8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4) 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5) 신기술 활용 실적	1.0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다.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6)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8 6.6 6.4 6.2

주1) ‘가’목의 기술자 평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주2) ‘가’목의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는 과거 동일업종(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업종, 단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다른 업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

주3) 일반기술자는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기술자로 평가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종합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4) ‘나’ 목은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

주5) ‘다’목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동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주6)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신기술개발 활용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7) 기술자 현황은 관련협회의 증명서나 전산상 자료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방법

-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
-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 그룹<별표3>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다만,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4)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종합평가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 (1)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심사 대상공사와 동일공종의 공사현장에서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등급계수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예시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 투자비율”이라 한다) 심사방법

- (1) 최근연도 이전에 설립된 업체 : 등록(면허)업종에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심사한다.
- (2) 최근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3) 최근연도 이후에 합병한 업체
 - (가)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습)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금

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최초 결산서는 합(습)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는 최초결산서의 합(습)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4)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평가기준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평균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투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식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2)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4)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5)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사만 평가한다.

다)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증명서 제출방법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 내용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등의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거나 동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 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A. 90점 이상	10	10
B. 85점 이상	9	9.5
C. 75점 이상	8	9
D. 75점 미만	7	8.5

-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별표3>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 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주3)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 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0000 국도 확장공사	200	90
0000 교량 보강공사	300	85
0000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Rightarrow \text{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frac{(200 \times 90\text{점}) + (300 \times 85\text{점}) + (500 \times 95\text{점})}{(200 + 300 + 500)} = 91\text{점}$$

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채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 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 액(B) 대비 하수급예정 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 80%미만 C:80%이상 ~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 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적격심사기준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 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 (3) ②의 경우 기초금액 대비 60%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 (1)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6-1>에 의한다.
- (2)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직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 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주4)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만 참여토록 한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마. 사회적 신인도 평가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산한다. 다만, 기술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방법	비 고
재해율 평가	0.5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frac{\text{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text{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0.3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1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frac{A\text{업체}}{\text{시공비율}}$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frac{B\text{업체}}{\text{시공비율}}$...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1
2건 이상 3건 미만	0.2
3건 이상 4건 미만	0.3
4건 이상 5건 미만	0.4
5건 이상	0.5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배 점
상호협력평가	○평점 90점 이상인 자	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4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3)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 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 산식

$$\text{A업체 공중전문성 비중 점수} \times \text{A업체 환산 지분율} + \text{B업체 공중전문성 비중 점수} \times \text{B업체 환산 지분율} \dots$$

$$\text{공중전문성 비중} = \frac{\text{A의 10년간 동일공중그룹 실적 총액}}{\text{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 점수

등 급	점 수
A. 40%이상	0.5
B. 35%이상	0.4
C. 30%이상	0.3

4) 건설인력고용

가) 건설인력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복합업종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text{점수} = \text{고용탄력성 평가점수} - \text{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값을 말한다.

- (1)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에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 년도로 한다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원수급인인 건설 현장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 하되 최근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 증감률은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표준화하여 산정한다.

산정예시

$$\text{고용탄력성} = \text{피보험자 증감률(표준화*)} - \text{기성액 증감률(표준화*)}$$

$$\text{3개년간 증감률(15년도)} = (\text{'11년 대비 '12년 증감률}) \times 40\% + (\text{'12년 대비 '13년 증감률}) \times 60\%$$

$$\text{* 표준화 산식} = (\text{변수값} - \text{평균}) / \text{표준편차}$$

(6) 고용 탄력성 점수

심사항목	배점 한도	평가방법	비 고
고용 탄력성	0.5	• 1등급	
	0.4	• 2등급	
	0.3	• 3등급	
	0.2	• 4등급	
	0.1	• 5등급	
	0.0	• 6등급	

$$\text{A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times \text{A업체 시공비율} + \text{B업체 고용 탄력성 점수} \times \text{B업체 시공비율} \dots$$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 (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 (1)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를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2)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3)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감 점
1~2건	0.1
3~4건	0.2
5~6건	0.3
7~8건	0.4
9건 이상	0.5

$$A\text{업체 건수 점수} \times A\text{업체 시공비율} + B\text{업체 건수 점수} \times B\text{업체 시공비율} \dots$$

5) 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가 방법	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0.5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0.3

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 업체별로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한다.
- 2) 토목건축공사사업의 경우 토목과 건축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 다. 추천

제8절 그 밖의 사항

1.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 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아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 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공비율 산정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times 2/3$
 -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9절 보 칙

1.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다른 계약예규의 폐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은 폐지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6년 4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8. 3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절 ③마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부 칙(2021. 9. 6.)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와 별지양식

《 별 표 》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2.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
3. 동일공종그룹 구분표

《 별지양식 》

1. 적격성 심사 신청서
 - 1-1 종합평가 심사 신청서
2.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 2-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3.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4. 업체현황조서
5.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6.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6-1 전가·그 밖의 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7. 시설공사(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 7-1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9.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0.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1. (최초, 월말, 반기,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범위

가.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적용한다.

나. [별표2]에서 정한 범위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지양식]에 따른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2)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에 따른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을 추가해야 한다.

라. [별지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는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계약서 등)를 제출

나.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다. 시공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서류를 제출한다.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1)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 (2) 심사 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 (3)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 (4)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 1) 동일공사 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 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 2) 동일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가) “1)”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관급금액 중 미기재 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 3)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 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기관이 연차별로 발주.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0)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9절 “2”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2)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가) 건설공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 (3) 포괄적 사업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3)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가) 시공 중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까지 시공한 부분은 변경되기 이전 시공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하고 변경된 이후의 시공부분은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한다.
- 나)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2절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최근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실적 누계액의 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 증명서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 신고 시 누락 신고한 경우는 관련협회 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2”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실적의 인정은 제1절 “4-나-5)”의 방식에 따라 업종 실적을 인정한다.

제3절 실적증명서 심사기준과 발급요령

1.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증명서 심사기준과 발급요령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1-1>을 준용한다.

[별표 2]

공종별 동일공사 범위

구 분 공 종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비 고
1. 교량 A. 현수교, 사장교(경간 200m 이상 교량 포함)	○길이 200m 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교량 포함)	○길이 200m 이상 A·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C. 경간 50m 이상 교량 포함, 1,0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길이 100m 이상 A·B·C등급 교량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길이 100m 이상 A·B·C·D등급 교량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나. 청사 (여객, 화물 터미널)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 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 이상의 건축공사	
3. 댐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5. 간척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6. 항만 가. 계류시설 나. 외곽시설	○30억 원 이상의 계류시설 ※준설, 매립 제외 ○30억 원 이상의 외곽시설 공사 ※준설, 매립 제외	
7. 철도	○500m 이상의 철도·지상구간 지하철공사	
8. 지하철(도시철도)	○100m 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9. 터널공사	○200m 이상의 교통터널공사 (지하차도 공사 제외)	
10. 발전소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11. 쓰레기소각로	○소각 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소각로 ○소각 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 소각톤수	
12.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13.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나.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14. 준설	○20억 원 이상의 준설공사	
15.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운동장, 체육관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16. 전시시설(전시장)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17. 송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18. 변전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별표 3]

동일공종그룹 분류표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성 심사 신청서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위 공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붙임 : 1.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3. 업체현황조서 1부
 4.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5.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6. 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7.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10.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 1. 공 사 명 :
- 2. 수요기관 :
- 3. 제 출 자 :
- 4. 첨부서류 확인

①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②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 1부 ③업체현황조서 1부 ④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1부 ⑤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1부 ⑥시설공사 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1부 ⑦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부 ⑧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결산서 감사보고서 1부 ⑩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1-1호 서식>

종합평가심사신청서

- 공사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20

위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평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20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붙임 : 1. 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4.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5. 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6. 시공평가 결과 (증명서) 1부
 7. 그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 1. 공사명 :
- 2. 수요기관 :
- 3. 제출자 :
- 4. 첨부서류 확인

①종합평가 자기평가표와 심사표 1부 ②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부 ④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1부 ⑤경영상태 등의 평가사항 1부 ⑥시공평가 결과(증명서) 1부 ⑦그 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위 건 공사의 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적격성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적격성 심사대상 공사

2. 적격성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3. 작성자 연락처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 평가			
	신용평가			

<별지 제2-1호>

종합평가 자기평가와 심사표

1. 평가대상 공사

2. 평가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	평가 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입찰가격					
기술이행능력	동일실적 경과 정도				
	기술자보유	현장대리인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신기술개발· 활용실적	신기술개발			
		신기술활용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사회적 신인도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건설인력고용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사회적 신인도 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수급체 . 단독 현황표

1. 대상공사

공 사 명		입찰일시	
-------	--	------	--

2.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 이행방식과 그 내용	이행방식				
	토목(100%)				
	건축(100%)				
	기타(100%)				
④ 시 공 비 율(%)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 업종 등	토건 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⑧ 동일공사 실적	규 모				
	금 액				
⑨ 5년간 업종 실적금액					
⑩ 기술자 보유 평가 (현장대리인, 경력, 일반, 품질, 안전)					
⑪ 신용등급 평가					
⑫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⑭ 기술개발 투자비율					
⑮ 시공품질 평가					
⑯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⑰ 신인도 등록내용					
⑱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⑲ 그 밖의 사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이행방식과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3) 단독 참여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보유 등록(면허)현황						
업 종	등록(면허)번호	취득년월일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순위	비고	
토목 건축 공사업						
토 목 공 사 업						
건 축 공 사 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준 설 공 사 업						
조 경 공 사 업						
해 외 건 설 업						
전 기 공 사 업						
정보통신공사업	일반					
	별종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대기오염방지 시설업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오수 처리 시설업						
소방시설 공 사 업	전 문					
	일반	기계				
		전기				
전 문 건설업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확인·제출·통보·신고·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별지 제5호 서식>

10년간 동일 공사 실적명세서

○심사 신청 공사명 :

심사대상 공종	동일 공사 실적 심사신청 내용						
	공사명	구분	규모	금액	시공자	준공검사 완료일	협회나 조달청
	소 계						
	소 계						
	소 계						
<p>본 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인)</p>							
<p>※ 주1. 1건의 동일 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p>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3)발주기관 (발주자)			
(2)공사위치									
(4)시공사 (대표)	①회사명			②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영업소재지						⑤전화번호		
(5)계약과 준공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총공사기준 작성)	(가) 총공사기준				(나) 금채(연차) 공사기준				
	①계약일자			④공사금액 (준공+관급)			①계약일자		
	②착공일자			⑤준공금액			②착공일자		
	③준공검사완료일			⑥관급금액			③준공검사완료일		
(6)공사성질	①건설공사	신규공사() 확장공사() 개·보수공사() *해당란에 ○표							
	②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7)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주계약자관리방식()								
(8)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품질, 공사관리() 시운전() 기자재제작설치() 기자재설치() 기타()								
2.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시공사 (대표)	시공사	시공사						
(1) 회사명									
(2) 대표자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① 준공금액									
② 관급금액									
(4) 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이나 적격성심사 대상 공종 시공 규모, 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적격성심사 대 상공종의 금액			
① 시공회사별 적격성심사 대상 공종의 준공금액			
② 시공회사별 적격성심사 대상 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① 하도급자			
② 하도급공사 규모와 금액			
③ 하도급금액(준공+관급)			
3. 붙임			
(1) 그밖에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 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와 입찰 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 2) 해당 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 중 부도, 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함.
- 4) 이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5) 시공실적증명서와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해야 함.
-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각각의 규모와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지 제6-1호 서식>

전기,그 밖의 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1. 일반적인 사항					
(1) 공 사 명			(3)발주기관 (발주자)		
(2) 공사 위치					
(4) 시 공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5) 계약과 준공 (총공사기준)	계 약 일 자		준공금액		
	착 공 일 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준공검사완료일				
(6) 시공 중인 장기 계속공사나 계 속비공사의 인 정실적	인 수 사 용 일		실적규모		
	인수 사용 금액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 공사 성 질	설체()신설()이설()증설()개설()조정()공사, 보수공사(), 교체공사() ※해당란에 ○ 표				
(8) 실적 종류	설계(), 시공(), 감리(), 기타() ※해당란에 ○ 표				
(9) 공동도급여부	단독도급(),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10) 하도급유무	하도급 있음(), 하도급 없음()				
2. 전체 시공실적 규모					
(1) 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2) 그 밖의 시공실적 규모					
3.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 란은 “해당 없음“ 기재)					
구 분	시공사(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자	(인)	(인)	(인)	(인)	
(3) 지 분 율 (%)	%	%	%	%	
(4) 준 공 금 액					
(5)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액					
(6) 공동수급체별실적규모					
※ 상기의 공동도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도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5)년간 업종실적 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등록 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건 수	실 적 금 액			비 고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p>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p> <p style="text-align: right;">대 표 자 : (인)</p>						

주1) 입찰공고일 직전연도 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한다.

주2) 입찰공고상의 해당 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한다.

(예) 토목공사는 토목, 건축공사는 건축, 전기공사는 전기만 기재한다.

주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4) 실적금액은 해당연도의 실적금액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6의2 서식을 사용하며 실적증명 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별지 제7-1호 서식>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

1. 일반적인 사항			
(1) 공 사 명			(3) 발주기관 (발주자)
(2) 공 사 위 치			
(4) 시공자 (대표자)	① 회사명	② 업종과 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영업소재지	⑤ 전화번호	
(5) 계약과 준 공	① 계약일자	④ 계약금액	
	② 착공일자	⑤ 시공누계금액	
	③ 준공검사완료일	⑥ 미 시공금액	
(6) 계약의 종류	원도급(), 하도급(), 기타() ※해당란에 ○표		
2. 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공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자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 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5) 업 종 별 20 년도 시공금액	00업종		
	00업종		
	00업종		
3. 붙 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계약서와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20 년도 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해당 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2)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주3)민간공사와 자체공사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주4)본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 분	기 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 목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토목·토목 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 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당해 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 사(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 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 수도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 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 축품질시험	당해 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 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 청사, 공동주택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기 계 · 환 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 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 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당해 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 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전 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당해 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 (송전, 변전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시 공 지 원 기 술 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 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8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8-1호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 고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 호	성 명	소 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 여 기 간	점 수	비 고
								증명서첨부
합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부실별점 :

소 속		직 위		심사 대상공종	
성 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년 월
기술분야	건설기술자 종류 (자격증)	기술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일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담당업무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확인기관명) 20 위 사실을 확인함

-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건설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3) 기술등급 란에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 제1호 건설기술자(일반)의 기술등급이 기재됩니다.

